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3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상정된 안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 2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 2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 2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 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	2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	2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2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2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3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3
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3
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3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3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3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3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3
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37
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37

(10시03분)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및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총 18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0시04분)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 16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성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총 1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집시법 관련해서 시간 금지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면 오늘은 금지장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윤건영·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조건 없는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규정이 현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김영배 의원안은 교도소·구치소 같은 경우를 금지장소로 추가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안은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3차로 이하 도로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가번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법 제11조제3호를 보시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우에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4페이지로 와 보시면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옆의 표를 보시면 현행 11조를 보면 금지장소의 예외를 규정하는 규정들도 있는데요. 아까 3호에는 예외규정이 전혀 없었다면 1호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에서는 외교기관과 외교사절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에 따라서 단서를 신설하고 각 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외를 두는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대부분 많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서에 공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호를 보시면 김종양 의원안의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 활동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윤건영 의원안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일단 업무공간의 경우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공간은 의정활동이나 재판이나 이런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 공관 같은 경우에, 숙소의 경우에는 그 공관의 주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또 외교기관과 외교사절은 업무공간이나 숙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주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직무, 본연의 업무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할지, 각 호 신설 예외사유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의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법의 형량이 가능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 명확성 측면에서는 보다 더 나은 대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외사유에 직무 활동인지 대상인지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를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집무실 경계로부터 100m를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페이지라면 몇 페이지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윤건영 의원안에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다른 국가기관 및 공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가지는 교도소하고 철도나 이런 쪽인데요. 그리고 6번에 용혜인 의원안, 폐지 여부 결정하는 안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혜인 의원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몇 페이지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용혜인 의원안 19페이지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옥외집회·시위의 원칙적 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협행법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찬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 논거입니다.

집회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인 중요한 정치적 표현 수단으로 해당 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및 외교공관 등의 인근을 특정하여 집회를 금지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집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충분히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11조가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경찰이 재량을 남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찬성의 논거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반대 논거는 공공질서 및 헌법기관의 기능 보호를 위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점, 집회가 갖는 저항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해서 향후에도 평화적인 집회·시위만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공공안전과 헌법기관 및 외교공관 등의 기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11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다시 가의 1번으로 오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집회 금지를 할 수 없는 금지장소에 대통령 관저를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 이야기인 것 같고.....

○경찰청지안정보국장 유승렬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집무실. 집무실을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이야기고 또 어떤 관저라든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100m 안이라도 예외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게 3페이지에 보시면 김종양 의원은 업무 활동에 대한 방해,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윤건영 의원안에는 직무를 방해할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윤준병 의원안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든지 이걸 수정을 시켜 달라 이거지요. 두 개고,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가면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 교도소·구치소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등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를 아예 다 삭제해 버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는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 김종양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헌법기관의 기능 보호와 집회 자유의 조화를 고려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추가한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대통령 집무실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김영배 의원님 안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호영 의원님 안입니다.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등을 추가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이 부분도 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해인 의원님 안입니다. 1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안인데 이에 대해서 11조는 헌법기관 및 외교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므로 11조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내용이 설명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먼저 쟁점이 된 게 지난번에 대통령 관저, 기존 법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관 등에 대해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게 헌법불합치가 됐기 때문에 이 헌법불합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당연히 저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집무실을 포함한다는 게 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무실도 똑같이 관저나 공관에 준해서 그 기능 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 것 동의, 이것 포함해서 관저와 공관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안 둔 것에 예외조항 두는 것 동의. 그런데 예외 조건으로서 업무를 방해한다,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교도소·구치소 그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집회·시위를 확장하는 것은, 교도소·구치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집회·시위 하는 데 크게 동요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역사, 편도 3차선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용혜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지도 국민의 정치 표현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저도 존중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께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 듣기 전에.

○**전문위원 나아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좀 추려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장소를 설정한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의 현저히 낮은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하시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저는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큰 원칙, 커다란 자유라는 원칙도 가지고 있지만 집회·시위의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제약도 문제가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 충분히 정치적 의사나 이런 의사를 표시는 하되 일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이 집회의 목적이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목적의 집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녀 보면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너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저는 경찰이 신중 의견을 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해서 너무 무제한의 자유인 것처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권리 행사는 그 선에서 즉시, 그것까지밖에 미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입장을 냈으니까 외국의 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시고…… 외국의 집회·시위 태양이 우리처럼 이렇지가 않습니다. 과격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시위 문화를,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집회·시위도 막아야 하는 그런 선을 잘 찾아 주길 바라요.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는 이 집시법 관련된 이야기가 매번 이렇게 소위에 올라와서 매번 비슷한 이야기로 반복되고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 집회·시위에 대한 화두가 뜨겁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되는 건 없으

면서 계속해서 소위에 반복해서 회부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이 11조 폐지안을 제출한 취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럴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집회·시위에 관해서는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집회·시위라고 하는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애초에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취지조차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어떤 폭력적 상황이라거나 불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시위가 문제가 된다,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지지 않을 우려…… 지금 현행 법 조항에도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난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이 될 때 국회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뜻인데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집회 금지의 어떤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폭동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사상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사실 그런 폭력적인 사태는 이런 집시법상의 절대 금지 규정이 아니라 경찰들이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적용하는 법률로 다 규율을하게 됩니다. 실제로 폭쳐라거나 아니면 대통령 관저나 집무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 규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를 이렇게 절대 금지의 형식으로 집시법에 규율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도 여기 11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뿐이지 사실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인가요 그거 조정해 가지고 주요하게 집회 금지를 하는 도로들을 설정해서 이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대규모 집회 다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집시법 11조를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성급히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이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서 입법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활동 또 직무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집회 중에 또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시위에 대한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집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그렇지 않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우선 시민들이 집회로 인해서 그런 불편이 있다거나 또 정말 상당한 위해가 되고 위험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저는 주호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그런데 처음에 이 집시법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빠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때 집무실하고 관저하고 같이 쓴다고 해서 아마 그걸 뺀 것 같은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걸 집어넣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보수를 떠나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집회가 보수든 진보든 늘상 일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 불편에 대한 호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접근 관점이나 원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계엄을 거치면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헌법기관도 보호해야 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정부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개정안에서 세 분 의원의 안들이 예외조항에서 업무, 직무,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들고 싶은 거는 지금도 대통령실 앞에서는 1인 시위 형태의, 아니면 기자회견 형태의 그런 시위들이 편법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국회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정치적 의사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나 직무, 대상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규모로 제한하는 예외를 두는 건 어떨까, 10명 이내랄지.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지금 용산 앞에 가서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한 50명이나 30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규모로 제한을 해서 예외를 두는 건 어떨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입장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규모와 대규모라는 개념적 규정은 어떤 것인지도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정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직무, 업무 그다음에 대상 이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윤준병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재량이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회는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하게 되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고 국회 앞에서 하게 되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업무, 직무는 비슷하지만 대상은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금지할 수 있는 것이 넓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규모를 가지고 제한하거나 금지하자 이렇게 만일에 법안에 명시가 되면 신고하러 올 때 실제로는 100명이 오더라도 10명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 면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을 초과할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걸로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신고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대규모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면적에 관해서도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되어진 것보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면적이 늘어나면 그건 대규모로 본다? 신고를 $10m^2$ 했는데 $100m^2$ 까지 사람이 오게 되면 그걸 대규모로 보는 거고 신고를 $1만m^2$ 했는데 $9000m^2$ 만 오면 그걸 소규모로 보는 거예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50명 신고를 했는데 100명이 오는 거를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우려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1000명 정도 모여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동대나 배치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2000명, 3000명 대규모로 불어나게 되면 그걸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로 번져서 인근의 교통이라든지 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 탄핵 정국에서 신고를 할 때 국회 앞에 10만 명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런 경우에 평상시 국회 앞에서 10만 명가량의 집회를 한 전력도 있고……

○**위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10만 명으로 했고 그러면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법 내용에 보면?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전의 집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0만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규모라고 해서 금지하자는 게 아니고 그 10만 명이 모이더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찰로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면 경찰이 굳이 그거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하면 지금 있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이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위성곤 위원** 이게 적정해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이게 기존의 법률에도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행적으로?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지금까지 집시법상의 대규모 또는 대규모 집회·시위

로 확산될 우려 이게 예외적 금지조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속.

○**위성곤 위원** 제도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소위원장 서범수**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제가 자꾸 일반론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대행께서는 아침에 국회 1인 시위하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주호영 위원** 계속 차를 대놓고 고출력으로 반복된 녹음을 계속 틀면서 출근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전체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영등포서도 그렇고 우리 국회사무총장에게 해도.

그다음에 제가 어떤 한 경우를 보니까 고용관계에 불만이 생겨서 상복을 입고 상여를 갖다 놓고 출근하는, 그 본사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목적보다는 주위 사람을 가학하려는 의도가 훨씬 더 센 이런 집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지를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법을 만드는 국회 앞에서 출근할 때마다 똑같은 녹음을 틀어서…… 그건 소음 정도가 높아요. 필요하면 소음 규제를 낮춰 달라고 하든지. 지금 단속지침 시행하고 있는 그걸 피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권리라는 게 타인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범위에서의 권리이지 타인에게 가해를, 가학을 하면서까지 하는 권리는 그건 헌법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자꾸 헌법정신만, 헌법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만 너무 내세우지 말라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선까지만 확장되는 거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무제한의 헌법상 권리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집시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나라가 도대체 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 장소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고출력으로 험한 말을 하고 하는 그거의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지금 우리 논의의 쟁점이 예외금지조항에 집무실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예외조항을 둘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연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경찰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윤준병 의원님 안,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이게 좁혀진다면 거의 예외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국회에 가서 시위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시위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은 제가 볼 때 원래의 취지와는 좀 어긋난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숫자도 말씀하시고 대규모의 기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지표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집회가 가지는 시위가 가지는 성격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집회의 시위와 내용이 확산될 가능성은 적고 또 폭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규모나 시위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과 그 시위가 가지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게 대규모로 갈 것인지 폭력을 수반할 것인지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안 중에서 세 번째 안을,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냐 소규모냐의 인원은 집회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보면 오늘 나온 이야기는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대상으로 넣을 것이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으로 넣더라도 예외 사유를 어떻게 신설 할 것인가라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추상적이다,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예를 들면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대규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대규모·소규모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직무를 방해 할 우려가’ 그다음 ‘업무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이것도 너무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찰청 입장은 이것 가지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경찰에 재량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거……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지……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또 금지통고·제한통고를 할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테니까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대규모와 소규모 말씀을 들었지만 $10m^2$ 신고했는데 $50m^2$ 가 되면 그게 대규모라고 판단하는 이런 규정에 보면 너무, ‘집회와 시위가 폭력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이 정도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집회는 보장돼야 되고 경찰 입장에서 10만 명 신고했는데 한 20만 명, 30만 명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막기도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폭력사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발성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해 주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폭력사태가 우려되거나 폭력사태가 진행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위 금지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수정 제안해 봅니다.

○**양부남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법은 명확해야 되고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의 우려, 우려 그 자체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 여부를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마는 집시법 11조에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지 않은 1호 그리고 2호, 4호, 그 5호도 일부지만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호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침해 우려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지 않았던 1호 그리고 2호, 4호, 5호도 뜯어고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우려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경찰청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업무 활동, 직무 방해 또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외교사절 숙소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다른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을 대상으로 집회·시위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옆에 외교사절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지요? 업무 방해라든가 직무 방해 이런 게 있으면 집회를 못 하는 거잖아요, 업무 방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대상으로 하면 업무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왜냐하면 금지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금지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위를 하니까 그것은 스톱시킬, 금지시킬 명분이 규정상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런데 그 옆에 외교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집회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상으로 정하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 경계선이 명확하잖아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위원님 말씀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는 허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계선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중에서 대상으로 정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집회·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본인들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른 그 기관 때문에 그 앞에 가서는 아예 집회·시위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 방해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금지할 수 있는 재량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침범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업무 방해……

○권칠승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요. 명확해서 오히려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업무 방해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재량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훨씬 더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런데 예를 들면 대상이라는 말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기관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집회를 당연히 허용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또 다른 것으로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법에 대해셔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가 시내 한복판에 그냥 이렇게…… 가정입니다, 한복판에 다른 이웃집하고 담이 붙어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업무 방해냐 직무 방해냐라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이 정도 시끄럽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시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관저 옆에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있어요. 거기 집회 하려 왔어요. 그런데 이 거리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강하게 금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게 강한 게 아니고 명확한 거지요. 오히려 금지시킬 수 있는 명분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렇게 되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하는 집회를 말씀하신 대로 다 금지, 다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직무나 업무로 명문화를 해 놓으면 그냥 다 금지시킬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집회·시위조차도 다 못하게 되잖아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지되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 맞는 것 같은데?

○용혜인 위원 그런데 대상을 기준으로 예외 없이 금지하는 조항들이 다 위헌 판결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자꾸……

○권칠승 위원 아니, 대상 뒤에 예외규정을 붙여서 지금 헌법불합치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헌법불합치 문제를 벗어나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벗어나는 건데, 지금 직무나 업무를 규정으로 해 버리면 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훨씬 더 제한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제한될 것……

○권칠승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이게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이 금지장소, 11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통령 관저 50m 이내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다른 자기 이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11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것은 지형지물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처럼 저렇게 있으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한남동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100m 이내만 집회를 여태까지 금지해 왔는데 현법재판소에서 절대적 금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인근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로터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양부남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대상으로…… 지금 대법원 앞에 가서 집회를 한다고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왜 대법원에 가서 신고합니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 조문대로 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연희 위원 대상이니까.

○양부남 위원 대상으로 안 해야 되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님 안이……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한다면 대상으로 안 해야 돼. 그런데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언가를 외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대상으로 해석이 돼 버리면 불허가 되어 버린다 이것이지. 그러면 용혜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 자체가, 11조가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이것 이지요. 그런 취지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그 뜻입니다.

○양부남 위원 내가 대신 설명 좀 해 드린 거예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거지요, 대법원 앞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국회의장 성토하는, 국회를 성토하는 집회를 냈다 치자, 그렇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소위원장 서범수 국회의장을 성토하는 그것은 여기에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런 식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내 주셨거든요. 여기에 옥외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대충 동의를……

○용혜인 위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동의하기 어려워요?

○용혜인 위원 이렇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오늘 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용혜인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잠정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지금 집무실하고 국무총리 공관이 추가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집무실만.

○경찰청차장 유재성 국무총리 공관은 기존의 금지구역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돼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금지구역이었으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김종양 의원안, 윤건영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 예외사유 신설하는 것 동의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오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을 보시고 경찰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와서 같이 의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조항하고 비교해서, 다른 조항하고 맞춰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인용하지 않은 현재 판결문의 취지가 있는데요. 현재 판결 결정요지에 2022년에 판결 난 것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점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서 집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이 현재의 판결 취지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집시법 11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을 통해서 어떤 최소한의, 폭력적인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에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경찰청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입법취지에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11조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다시 경찰청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오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항에 교도소·구치소 등 추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추가하는 부분도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짚어 봐주십시오, 경찰청에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정희용 의원안과 채현일 의원안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수당과 재해보상금 그리고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현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은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여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정부안과 6번 양부남 의원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자율방범대는 대원이 9만 5304명이고 지금 지자체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25년에 총 336억 원입니다.

가번, 먼저 정희용 의원안과 채현일 의원안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보고드리면 서범수 소위원장님께서 의용소방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경찰청의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수민 위원께서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기계적인 일인 당 정액 지급보다는 위험지역, 우범지역, 시간대별 차이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양부남 위원께서 사무실 운영비, 냉난방비 등 기본 지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수당 지급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호영 위원님께서 보상은 필요하나 수당보다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 재해보상비 지급 의무화에 대한 문제 순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서 자율방범대가 수행할 활동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등이나 시도지사 등이 요청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 지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예, 5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 지원 범위에 사무공간 임차료 명시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임차료 등 사무공간 확보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행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도 자치단체가 방범초소·사무실 등 임차비용을 포함해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 이를 법률로 상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희용 의원안, 채현일 의원안은 시·도경찰청장 등이나 시도지사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그 부담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은 위험수당 성격인 반면에 자율방범대는 예방순찰 중심으로 긴급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수당 지급 요건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활동이 상시화될 경우 상당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해보상비 지급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법이 보험가입 비용 지원 규정만 두고 있는 반면에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자율방범대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율방범대가 신청하면 무상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의견과 조문대비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현 의원안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만을 규정한 반면에 이만희 의원안은 물품의 무상 양여·사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에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사용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무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이 국유·공유재산을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단체 중 자율방범대만 국·공유재산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 자율방재단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이만희 의원안과 같이 물품의 무상 양여·사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양여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감소 및 자치단체 등의 통제·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여를 특례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 그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별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같은 법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경찰청 의견이고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율방범대 참여 연령 확대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미성년자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결격 대상으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참여 가능 연령은 19세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에서는 결격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제안을 하였고 양부남 의원안에서는 결격 대상은 미성년자로 두되 친권자 모두 방범대원이고 미성년자의 활동에 동의할 때는 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하는 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22년 자율방범대법 제정 전에는 자치단체별로 미성년자의 자율방범 활동 참여도 가능하였고 실제 참여했던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및 해양재난구조대 관련 법령에는 명시적 연령 제한 요건이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연령 제한 완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야간순찰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 있어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고 미성년자의 연령 제한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한데 양부남 의원안과 같이 조건부로 미성년자 참여를 적용할지, 정부안과 같이 연령 제한을 일부만 완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명시적 연령 제한을 법률에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모집공고 시에 미성년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청 의견과 조문대비표가 있고요.

19페이지, 부칙의 내용입니다.

정희용 의원안, 채현일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박정현·이만희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정부안과 양부남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 및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국민 혼란 방지 및 법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박정현·이만희 의원안과 같은 경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내용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 양부남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연령 결격사유가 변경되는 경우 국민의 혼란 방지와 법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5페이지 가번 운영비·수당·재해보상비 관련된 경찰청 의견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현장 활동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에 대해서, 전체 활동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

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너무 확대된다 그걸 우려하시기 때문에 활동수당 지급은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서장이 명절특별방범을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대규모 축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행령 등에 이렇게 요건을 좀 구체화해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나번 무상 대부·사용에 관련된 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치안활동을 위해서는 사무공간 등 거점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 중에서는 박정현 의원님 안처럼 국유재산·공유재산에 대해 무상 대부하는 것만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다번 연령에 관련된 경찰청 의견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으로 1살 하향하는 정부안 수용 입장입니다.

참고로 순경 채용도 18세 이상이면 순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재해보상비 지급 의무화 규정 관련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했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저는 못 들었는데.

○**박정현 위원** 7쪽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경찰청 의견이 뭐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경찰에서 효율적으로 협조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17페이지에 이게 지금 정부안이라면 경찰청이 낸 거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때 법제처 중심으로 해서 청년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자 이런 취지에서 범정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의 연령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장 서범수** 18세를 기준으로 하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리고 순경도 18세 이상이면 순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정도면, 양부남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너무 하향 연령이면 좀 부담스럽지만 순경도 18세 이상이면……

○**소위원장 서범수** 18세입니까, 순경도?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18세 이상이면 순경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법제처 안이에요, 경찰청 안이에요? 이때 정부안이라면 경찰청 안 아닌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경찰청에서 경찰청이 내놓고는 정부안 수용한다는 입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이 뒤에…… 그걸 짍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선 자율방범 업무가 자치경찰사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경찰서 내에서는 어느 부서가 주로 담당을 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범죄예방대응과가 담당합니다.

○**위성곤 위원** 범죄예방대응과는 국가경찰사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승렬** 자치사무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사무에도 포함이 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경찰청차장 유승렬** 범죄예방대응과에 지역경찰이 있는데요. 지역경찰 업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혼재가 돼 있고, 그리고 예방 업무는 자치 업무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결국은 수당과 관련돼서 의용소방대인 경우는 위험수당 성격인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순찰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위성곤 위원** 이게 자율기구인데, 자원봉사적 성격을 갖는데……

지금 관련돼서 자율방범대에 제복 지원은 되고 있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런 부분은 자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이제 제복은 지원되고 있고, 관련되어진.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사무실 운영비도 자치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정부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국가 단위에서도 그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까?

○**경찰청차장 유승렬** 그러니까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다, 국가도 지급할 수 있고 자치단체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자치단체는 이미 조례를 만든 지역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거고.

○**경찰청차장 유승렬**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액수가 좀 다양합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승렬** 예, 필수경비……

○**박정현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수당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경찰청차장 유승렬** 예, 수당은 아니고요. 수당은 현재까지는……

○**박정현 위원** 그냥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승렬**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 지급해 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자치단체마다.

○**위성곤 위원** 아니, 법률 검토에 보면, 검토의견서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있고 또한 수당 지급이 별도로 있는데, 법률 안에. 그렇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위성곤 위원** 그 수당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경위 월급의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41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도 41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정부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까? 책정됐다는 말이……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러니까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업무도 있을 수 있고 자치업무도 혼재돼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가 같이 줄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예.

○**위성곤 위원** 아니, 분명하게 지금 2025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수당.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2026년 예산편성에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수당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당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수당은 지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410억이라는 것은 수당을 산출해 보면 이 정도 비용이 소용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가 어떤 건가를 묻는 겁니다, 몇 회에 얼마에 어느 정도로 산출하고 있는 것인지.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게 지급단가는 경위 시간외수당 기준 1만 3000원으로하고요. 그리고 9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4시간 이렇게 하면 410억 정도 나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게 너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국장님, 경찰청 수용 의견에 보면 예를 들면 활동수당에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예시했는데 거기에 좀 국한해서 하겠다?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럼 추석 때 언제, 설날 때 언제, 이런 이야기지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숫자까지 몇 명 동원이 되고 몇 시간 하고 이게 나와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 '9만 몇천 명입니다. 거기에 36시간입니다. 곱하기 하니까 418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박정현 위원** 34시간이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의용소방대가 위험수당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도 하는데 매일 나갈 때마

다 줄 수는 없고요. 경찰관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동원됐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두세 시간 한다면 그걸 계산해서 34 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경찰청 수용 의견에 ‘활동수당을 경찰관서장 등이 계획을 통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활동에 한해 지급’ 해서 예시의 명절 특별방범활동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월 정액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법이 설정이 되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이나 조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당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수당을 주게 된다고 결정을 하면 나중에 시행령에 담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현재까지는 경찰관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명절 특별방범활동이라든지 그럴 때 필요할 때 그때 동원될 때만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조례 내지 우리 시행령으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차장님,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 설득하러 왔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설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갖고 와야 될 거잖아요. ‘418억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잖아, 지금. 금방 이것처럼 1년에 명절 특별방범활동에 주겠다 그러면 1월 달에 언제, 2월 달에 언제, 이런 계획서라도 만들어 와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활동수당을 주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그냥 막연히 계산해서 ‘418억 주면요 우리가 경찰청에서 이걸 세분화시켜서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잖아, 오늘 논의하는 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얼마를 달라 이게 아니고……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차장님, 1년 중에 관서장이 우리 자율방범대원을 특별히 소집을 해서 방범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몇 차례 정도 될 것 같아요? 영등포 경찰서장이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명절이 우선 두 번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규모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사안 또 그 주변에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동원을 하고 그때 이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러니까 법안을 심사하려 오는데 그렇게 좀 세밀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오셔야지요.

○**위성곤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 시급이 열만지 아세요, 혹시 차장님? 최저임금 시급.

○**경찰청차장 유재성** 제가 구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경찰공무원, 뒤에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정부가 규정한 시급.

○**경찰청차장 유재성**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1만 300원인데요. 1만 3000원은 경위라는 직급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금액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주의 경우는 자치경찰대가 있고 주민자치경찰대라는 것을 두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선 파출소에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동이 주로 자율방범대는 약간 순찰을 중심으로 하고 주민자치경찰대는 행사 지원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를 행사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있나요, 실제?

○**경찰청차장 유재성** 지금은.....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는 자율방범대는 하지 않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약간에 약간 순찰 보조를 하고 있는 형태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행사나 이런 데 있으면 또 약간에도 순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행사에서 좀 더 나가면.....

○**박정현 위원** 행사 지원합니다.

○**위성곤 위원** 중심지역관서제도 하면서 사실상 파출소가 해산돼 버렸고 거기에 있는 자율방범대들도 사실상 해산돼 버렸고,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니까.

○**경찰청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아니, 오히려..... 중심지역관서와 공동체지역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체지역관서에서는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해산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지역관서장이 있으면서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봉사활동 단체를 취합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랑 판단이 좀 다른데 관련해서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의 범위와 범주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라든지는 법에 규정이 있어서 수당을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은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돈을 줘야 되는데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얼마 달라는 게 아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해 줘서 자치단체에서도 자율방범대 활동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그 근거만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럼 경찰청에서는 아예 예산 관계는 나 몰라라, 자치단체에 다 맡기겠다 이 이야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그런데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별로 일단 수당을 지급하는 현황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자치단체별로 어디가 열악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국가가 지원하려면 모든 의용소방대의 활동수당에 국가가 매칭을 해서 30%면 30%, 50%면 50% 이렇게 나가야지 어디는 열악하니까 거기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어디는 팬찮으니까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일단 저는 좋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역의 밤거리 를 다 지키고 계셔서 그나마 안전이 지켜지는 거는 좋고 그분들의 수고도 저는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수당을 주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관서장이 특별히 요청하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거나 그리고 또 추석 때, 명절 때 이런 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당이 되면 월 얼마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 행사 때 자율방범대만 지원합니까? 다른 모든 봉사단체들이 지원하는데 자율방범대에만 수당을 준다고 하면 다른 자원봉사단체랑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박정현 위원이 주지 말자 했다고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차장님, 박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수당을 주자는 주의인데요. 단지 지금 경찰청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

자율방범대 소속이 어디입니까, 차장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지요, 지역에 내려가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보고 알아서 주라고 내팽개치고 일은 경찰서에서 시키고 이게 말이 돼요? 나름 경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보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다 같이 가지만 지금 소속은 엄연히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전부 자치단체 가서 받아라?

지휘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운영은 경찰서장이……

○소위원장 서범수 운영은 경찰서장이 하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서장이 운영을 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전부 일선에 가면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준다고 치면 거기 영이 서겠어요? 조직이 돌아가겠나?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세밀히 더 살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혹시 위원님들 다른 말씀……

○박수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법적 근거는 이번에 꼭 마련했으면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법적 근거, 경비 조항을 할 때 세분화하면, 너무 구체화하면 오히려 경직성이 생기고……

저는 경비와 수당 정도로 둥뚱그려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냥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쓰지 이걸 항목을 정한다든지 또 사무실 임차료 등등 하면다 중빙서류도 해야 되고 후속 작업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의 규정만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경찰청의 현장에서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경제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이런 제3섹터가 계속 크는 거거든요.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또民間에 다 맡기기는 어렵고 이런 제3지대가 생기는 거고.

저는 제 지역구에서 보면 자율방범대가 전형적으로 그런 영역으로 보이고 다른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도 활동하지만 안전에 대한 욕구는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그런데 경찰이 이걸 직접 예산으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시민사회의 건강함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지지하는 차제인데,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니까 그다음은 모르겠다 이렇게 저희가 들리니까, 그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는 어떠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경찰 업무와 이런 공공의 영역을, 제3지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경찰청의 입장이 이러니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예산 면에서 어떠한 것은 어떻게 확보해 가고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런 경찰청의—뭐랄까요 홀리스틱(holistic)하다고 그러나요—전체적인 시각이 정리되고 얘기가 돼야 저희 법안심사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여기서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은 시행령에 있는 걸 법으로 옮리겠다 이 이야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두 번째,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달라 그 이야기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세 번째, 재해보상비 지급 의무화는 자원봉사종합보험으로, 굳이 안해도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는 해 주시면 좋은데……

○소위원장 서범수 별로 할 의지가 없네.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것은 보험에서 하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그 이야기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당 관계는 근거 조항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법 안에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에서 적어도 여기 와서 법안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러 왔으면 그런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맞춰서, 갖고 와서 설득을 시켜 달라는 거지……

○경찰청차장 유재성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래서 근거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고 또 시행령에 상세하게 지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서범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박정현 위원 저는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돼요?

○박정현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에 대한 비용은 우리 위원님들 다 주자는 의견입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건데 법으로 올리겠다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시행령에 있으니까 법에 안 올려도 나오긴 나와요.

○소위원장 서범수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양부남 위원 중요한 것은 수당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고.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양부남 위원 또 하나는 뭔가 보상을, 지금 보험에도 들었는데 보험에 직접적인, 자율방법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지급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네요.

그런데 보상비는 저는 수당으로…… 보상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자원봉사종합보험에 들 수 있다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어차피 자율방법대원이 어떠한 방법 활동을 하다가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보험금에서 깎이는 것 아니에요? 그게 조삼모사지 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당을, 보상비를 준다고 규정을 두려면 연동해서 보험금에서도 삭감되지 않는 규정이 따라와야 저는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간 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한 안인데……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받은 금액만큼이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경찰청차장정보국장 유승렬 위원님, 그 말씀 맞는데요. 지금 보험 가입률이 54%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래서 보험 가입률이 좀 저조하고요. 그런데……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면 자율방법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방법대원들을 보상하는 차원이라면 차라리 보험 가입을 100%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통일적이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법대에게 수당을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활용될 수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을 주려면 당연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속성, 업무의 내용

과 연계도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당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조직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율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지요. 센터에 등록을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보험료를 납입해 주지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생활체육 가도 생활체육인에 등록을 하려면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필수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상 자치경찰사무여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다 의무화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보험 가입이 안 되어진 분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수당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다 찬성하는데 그런데 지금 수당을 줄 주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당이 불특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수당이라는 항목이 되면 월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수당을 주자는 것에는 다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기적으로 수당을 줄 것인지 아니면 출동에 따르는 수당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 해에 몇 회 정도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만들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밑에 보면 경찰청은 활동수당은 일상적 활동 외 방범대 참여 필요성이 높아 경찰관서장 등이 계획을 통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활동에 한해 지급하는, 예를 들면 명절 특별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조금 동원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플러스알파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거까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임차료, 운영비 지원 관계 그리고 수당 지급, 이것은 좀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요.

재해보상비 지급 의무화 이 부분은 아까 양부남 위원님도 말씀이, 자원봉사종합보험 가입률이 왜 54%밖에 안 되나요? 이것 더 가입 독려를 하면 안 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험을 100%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분명히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위성곤 위원 제 견해인데요. 재해보상비 지급 의무화는 과도한 것 같고 저는 자율방범대원이 되려면 관련되어진 보험을 들도록 하는, 그러니까 재해보상 보험 가입 의무조

항을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그리고 사용 근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지금 같이 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개정이 돼야……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래야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설사 우리가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게 개정이 돼야 적용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이것은 그 법이 개정되는 걸 봐 가면서 우리가 같이 의논을 좀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언제쯤 개정이 되나요, 이것은?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회부됐다고, 기재위에 발의가 됐다 하니까……

○경찰청차장 유승렬 이게 법을 같이 동시에 바꿔야 됩니다. 별표, 제외 규정을…… 14조의2 이 조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조의2 이 조항이 넣어져야 무상 공급할 수 없다는 별표 그 예외규정에 이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되나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언제쯤으로……

○경찰청차장 유승렬 그것은 지금 기재위에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게 동시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위성곤 위원 기재부 의견은 어때요,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유승렬 그게 현재까지 개별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요, 기재부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 받으셨어요, 기재부?

○전문위원 나아정 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기재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율방범대는 민간자율조직이므로 특례 규모 및 특례 예상 대상, 장소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유사한 성격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자율방범대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 입장이 지금, 경찰청과 기재부 입장이 다른데 이걸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득하고 오셔야 이 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 먼저 설득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령이 하나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개정안 냈는데 이것 안 하고 가시네. 의견도 있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제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양부남 위원**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 제 개정안은 부모와 친권자가 모두 방범대원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방범대원 활동하는 데 동의했을 때는 미성년자도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취지는 젊은이들이 사회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제가 법을 내놓고 보니까 미성년자라면 10살도 미성년자인데 하한선을 제가 안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미성년자는 당연히 고등학생 이상 이 정도를 상정한 겁니다.

(서범수 소위원장, 권칠승 위원과 사회교대)

이 법이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가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분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만 있어서 좀 활력이 없는데 활력을 기여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18세 이상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양부남 위원** 상관없어요.

○**박정현 위원** 18세 이상으로 하셔도 상관없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방범대원화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청소년 방범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지도하에서 함께 방범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양부남 위원님께.

청소년들끼리 한 10여 명, 20여 명이 자율방범대에 같이 편성돼서 함께 순찰 활동도 하는데 경찰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이 방범대를 만들면 그 방범대 안에서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의무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이 함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방범대 운영을 할 때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거지요. 청소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달라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예 딱 단을 만들자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위성곤 위원** 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주자는 거지요. 청소년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 두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근거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성곤 위원** 문제가 있을까요?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양부남 위원님 안을 받아서 18세 이상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명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거는 저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용혜인 위원 동의합니다.

○양부남 위원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청소년들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자율방범대의 경험이 있는 어른들하고 같이하는 게 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어찌라고……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또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양부남 위원 18세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18세 이상,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그러면 정부안대로 18세 이상으로……

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박수민 위원 저는 양부남 의원님 원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론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친권자 동의라는 게 상당히 강력하고 안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친권자께 맡겨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늘 법안을 의결하지 마시고 보류해 뒀다가 다음에 의결하시지요. 한꺼번에 하시지요.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한꺼번에 하자고요?

○위성곤 위원 예.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하나 실적 내려고 했더니만……

○위성곤 위원 방망이를 두드리고 싶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안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안은 현행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를 법률에 상향해서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현행법 45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운전을 금지하는 약물이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인용해서 톨루엔 등 환각물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약물에 마약, 향정

신성의약품, 대마 그리고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신나,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약물을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개정안 제2조제1항제35호의 각 목 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경우에도 35조 각 목에 규정하는 조문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개정안 제2조제35호 각 목은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에 연동해서 변화될 것이 예측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향후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자 간 불일치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를 말하는 건데요—을 직접 인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페이지 부칙의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는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정의조항의 내용은 현행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 의견도 보고서상에는 신중검토로 냈었는데 전문위원 의견 말씀하신 대로 4페이지 수정의견처럼 35호 가, 나 이렇게 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 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이 바뀌면 연동해서 자동으로 바뀌게 하는 수정의견에 저희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제가 잠시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률이기 때문에.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예.

○양부남 위원 모든 국민들이 형을 받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라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논점이 된 게 내년 2월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약물에 의한 운전의 경우에 처벌받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약물의 정의 규정의 일부는 마약류관리법 플러스 행정안전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국민이 처벌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켰던 거고 전문위원의 수정안은 마약류에 대한 물질 외에 나머지 톨루엔, 기타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이 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법률을 원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대체적으로 제 원안보다는 수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항에 같은 법명의 개정안이 나와 있어서 14항 심사 후에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안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에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개정안에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 또 알선금지 위반 시에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최근 기업화·조직화 추세를 보이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억제하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법 운전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행위만 금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처벌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홍보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선은 무등록 운전교육의 부수적인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준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의 처벌 수준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는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광고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알선은 부수적인 행위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낮추는 방안에 동의하고 또 홍보도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까지 다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홍보’라는 용어는 궁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홍보’라는 용어보다는 약간 상업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광고’라는 용어로 바꾸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성곤 위원 잠깐만, 잠깐만……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예.

○위성곤 위원 광고와 홍보가 차이가 없나요? 홍보라는 것이 궁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찰청차장 유재성 어감이, 홍보를 이렇게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해야 될……

○위성곤 위원 만약에 SNS에,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운전면허를 개인교습해 드립

니다'라고 쓰면 그거는 광고라고 봅니다, 홍보라고 봅니까? 그거를 처벌하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나 홍보가 크게 다르지……

○위성곤 위원 광고라고 해도 그거를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그런데 보통 상업적 동기가 있으면 광고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상업적 의미를 떠면 광고라는 의미를 쓰고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소개하는 차원이라면 홍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아닌가 싶네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광고로 해도 되겠네요.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영업이니까.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그러면 용어를 광고로 바꾸는 데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 홍보라는 용어를 광고라고 바꾼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문위원 나아정 부칙과 관련해서 설명을 못 해서 부칙 부분……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부칙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 있었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부칙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설되는 처벌규정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외에도 벌칙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밑에 보시면 적용례를 적어 두었습니다. '제15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두 가지를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적용례를 2조에 붙이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제안한 의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그리고 제1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5항 및 1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입니다.

김종양 의원안과 이상식 의원안은 동일한 취지의 제안을 하셨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국외에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8조의3이 있는데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들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목적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자료 교환과 국제협력 활동은 너무 포괄적이고 침해되는 개인정보와 인격권에 비해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양부남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제공조의 범위를 도피사범 추적·검거 등 구체적인 범위로 국한할 필요가 있고 막연히 범죄 예방으로 규정하거나 자료 교환, 국제협력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서범수 소위원장님의 의견, 어느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교환하고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김성희 위원님의 의견, 현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과 신설하려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은 병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양부남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제8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조금 더 구체화했고 그리고 개인정보의 이전 요건에 대해서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부칙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김종양 의원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상식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칙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경찰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개인정보법이 바뀌어서 바꾼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제협력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때문에?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국제협력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 개정 이전에도 사실 똑같은 국제공조 이유로 개인정보가 이전이 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 그리고 국제형사 공조법 38조에 의해서 그동안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데 23년 9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이전되려면 특별한 법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개정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국제협력을 못 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지금은 기존의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그게 법률 위반이라면서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이전하고 있는 그런 정보 내용들이 예를 들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사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용을, 정보를 지워 가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그런 부분들을 더 특정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이 법이 만약 개정되면 저희들이 민감정보 그다음에 고유식별정보도 이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이 법이 바뀌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유식별정보 그게 어떤 건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크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생체정보 그다음에 범죄경력정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고유식별정보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거기에 나와 있는 고유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외국에 제공하는 것은 민감정보는 제공 안 하고 고유식별정보만 제공하는 겁니까?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아닙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도 이 법에 근거해서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유식별번호만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현행법상은?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예. 지금은 주로 피의자 식별, 실종자 식별을 위해서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사진 그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고유식별정보만 제공하고 있고 이 법이 통과되면 민감정보가 함께 간다는 거지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준형**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함께 제공한다는 것, 정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선거관리위원회법인데 오후에 정책의총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의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어서 심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운영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다음,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12시00분)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동완 사무차장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먼저 국정 심의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부터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간략하고 신속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양부남 의원님과 이성권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 사항은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의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인척 등이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고 선관위가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권 의원안과 양부남 의원안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신고 주체에서 이성권 의원님 안은 전 공무원, 양부남 의원님 안은 4급 이상. 신고 대상은 이성권 의원안의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기 때문에 8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양부남 의원안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 그다음에 양부남 의원안에 배우자가 빠져 있는데 저희가 양부남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실수가 있었다고,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이 취지라는 의견을 전해와서 양부남 의원님 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 그다음에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고 경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양부남 의원안의 마지막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자료 협조 요청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의 부정채용 논란이 있음을 고려할 때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대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의견의 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성권 의원님 안의 전 공무원의 경우는 너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 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주체로 하고 있는 양부남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였고요.

신고 대상 역시 이성권 의원님 안으로 할 경우 너무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부남 의원님 안과 같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배우자로 한정했고 또한 채용 방법에 있어서 이성권 의원님 안은 모든 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해서 필기시험을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실시하는 경력채용과 특별채용, 이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력채용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양부남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경로와 관련해서는 두 의견을 통합했는데요. 문제는 신고 장소를, 지금 현재 국가

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의 유사 입법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3쪽 왼쪽에 표를 보시면 국회의원의 경우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니지만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하단 부분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재산등록 관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사실확인 조항은 양부남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권칠승 선관위 의견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먼저 2023년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우리 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경력직 채용 관련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우리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과 관리를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자진 신고와 외부 공개 등을 통해 공무원 채용 등에 있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공무원인 국회의 보좌직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친인척 채용 여부에 대한 신고와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쪽 가번과 관련해서 3쪽에 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 주체는 수정의견처럼 친인척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둘째, 신고 대상의 경우 수정의견에 있는 현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도 해당되지 않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하는 경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에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서범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셋째, 신고 범위는 수정의견처럼 인사혁신처가 일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하고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채용 비리 차단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넷째, 신고 경로에 있어서 수정의견처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하는 경우에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2항과 3항에 따르면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현 법안에서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해당 주의를 따르지 않을 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 감사 업무를 사무처 소속이 아닌 위원회 직속인 감사 2과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고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의견으로는 오늘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5쪽 수정의견 제15조의4제2항 정보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정보 제공 요청 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 제15조의4제2항 문구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도입할 경우에 경남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좀 방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것을 4급으로 두는 것과.....

○**소위원장 서범수** 경남이 그때 5급이 있으면 사무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3급이었습니다. 그때 경남 총무과장이 3급이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문제된 것은 다 4급 이상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4급을 기준으로 한 게 아마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서 4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부남 위원** 제가 법을 발의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측의 의견에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주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10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성권 의원안은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각급선관위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양부남 의원님 안은 사무총장이 전현직 직원 친인척의 채용·승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성권 의원안은 일반시민, 언론과 같은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게 하여 채용 비리 및 부당한 인사 관행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관장기관은 선관위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 주체를, 채용실태 지도 감독 주체를 사무총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양부남 의원님 안은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채용·승진 현황의 제출대상이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으로만 규정되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현직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대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전직자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의 예를 참고하여 추적하는 경우가 3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친인척의 범위는 전술한 선관위 의견을 반영하면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인척 그다음 배우자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18쪽의 부칙을 보시면 개정안은 시행일이 이성권 의원안은 3개월 그다음에 양부남 의원님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양부남 의원님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경과규정에 대해서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0쪽 나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11쪽에 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으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국회 보고 대상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직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그분들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인맥 등을 이용해서 인사 부서의 후배들에게 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국회 보고대상 역시 신고대상과 마찬가지로 현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에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그리고 배우자만 보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수정의견처럼 보고대상을 채용 외에 승진 현황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정 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을 통과하고 그 내역이 매년 공개되고 있는 직원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다시 주게 돼서 오히려 인사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 보고대상을 승진은 제외하고 채용 현황만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8쪽 부칙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죄송한데 앞선 건 관련돼서 아까 다 4급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선관위에서 5급 이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고 그때 확인이 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 그 전수조사 할 때도 5급은 없었던 게 맞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관계자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혜인 위원** 예, 대상은 5급 이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실제로 문제가 된 사안이 5급은 포함이 안 되고 4급 이상만 있었던 것이 맞는지 좀 여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급 직원의 예비 사위가 포함됐었다라고 확인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것 외에……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용혜인 위원** 문제가 되는 채용 비리 사항이 아니다라고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 외에는 5급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문제는 다 4급 이상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맞습니다.

○**용혜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는 채용도 중요하지마는 승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진 여부에 대해서도 제 안처럼 보호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공무원이 입증을 해서 공개경쟁,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공직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맥을 동원해서 인사고과가 반영됨으로써 승진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개정 취지가 50% 몰각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도 넣어도 별문제는 없잖아요? 오히려 뜻렷하게 승진해서 또 오픈하면 더 자랑스럽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채용과 승진이 같이 즉 올라가게 되면 승진이라는 게 한 등급만 승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두 등급도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그것을 홈페이지 등에 만약 공개를 한다면 그 양반은 채용할 때도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승진도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네 계속……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봤을 때 그분들은 그런 걸로 해서 승진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지요. 오히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오픈하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강동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는 그대로 채용·승진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민 위원** 어차피 공개 하나 안 하나 음으로 양으로 다 아는 사안들이니까 저는 공개해서 양성화하는 게 이번 저희 검토 취지에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아까 선관위 차장님께서 1급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4급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양부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냈으니까, 1급으로 한다면 너무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저는 4급 원안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4급으로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건?

○**양부남 위원**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되어도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가 있습니다, 1급으로 한다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강동완** 현직 승진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현직 4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소위원장 서범수** 퇴직자도 4급 이상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한번 풀로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강동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들이 23년도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퇴직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됐었고요. 다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견이 다르면 다음에 의결하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참고로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 관계도 같이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직에 대해서는 4급 이상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권칠승 김성회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이연희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경찰청
차장 유재성
국제협력관 이준형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임시회록